

의안번호	제2804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사항	원안가결
------	------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0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2024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(안 제19조)
- 나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(안 제21조제1항)
- 다.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·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22조, 제23조)
- 라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소집 방법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(안 제2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
 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[복지지원과-15606(2024. 4. 15.)호]: 검토의견 반영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제17조제2항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제21조제3항	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단 구성에 ‘성별 균형을 고려하여’라는 문구 추가 제안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위원회의 구성에 ‘ <u>양성평등기본법</u> 제21조에 따라’ 라는 문구 추가 제안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평가단 구성에 ‘성별 균형을 고려하여’라는 문구 추가 및 위원회의 구성에 ‘ <u>양성평등기본법</u> 제21조에 따라’ 라는 문구 추가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7조제2항 평가단 구성에 ‘성별 균형을 고려하여’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‘ <u>양성평등기본법</u> 제21조에 따라’ 라는 문구 추가 반영함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675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중 “위촉직 위원은”을 “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하고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평가단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평가단은 도시계획, 교통, 의료,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<u>20명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9조(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구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.</p> <p>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<u>위촉직</u>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, 노인복지관련시설 종사자, 노인복지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	<p>제17조(평가단 운영) ① (현행과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<u>둘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0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</u> ---- ----- .</p>

④ (생략)

<신설>

제2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
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2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<삭제>

<삭제>

제26조(위원회 운영) <삭제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복지지원과장 오 은 겸

■ 노인복지법

- 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23.]

[시행일: 2026. 1. 24.] 제4조의3